

한국주거학회 논문집 논문심사규정 (부속규정 3)

1. 목적

이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논문의 심사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2. 논문편집위원회 역할

- (1) 논문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(2) 논문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한국주거학회논문집규정 및 부속규정에 따른다.

3. 심사위촉 및 방법

(1) 논문심사

- ①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관련 전공분야의 3인이 수행한다.
- ② 편집위원은 저자가 삭제된 투고논문을 검토한 뒤, 심사자 3인~5인을 추천한다.
- ③ 편집위원장(부편집위원장 대행 가능)은 추천의견을 참고하여 저자와 소속이 같지 않은 심사자를 순위별로 2배수 선정한 뒤 진행한다.
- ④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(장)이 포함될 경우 심사위촉 과정에서 배제한다.

(2) 논문게재

- ① 2인 이상의 “게재 가” 판정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“재심” 판정은 그 다음 판정의 결과에 따른다.
- ③ 2인 이상의 “게재 불가” 판정된 논문은 게재(채택)되지 않는다.

(3) 수정게재의 경우, 심사위원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.

(4)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촉을 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.

(5)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자료를 지상 공개할 수 있다.

(6)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때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, 논문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 제기에 따른 특별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내로 투고자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도록 한다.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논문편집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.

(7)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가 “게재 가”로 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표절, 중복 게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“게재 불가”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.

4. 평가

심사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 성과의 공헌도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.

| 항목 | 심사내용 |
|----|---|
| A | 1. 논문의 독창성 2. 공학적 측면의 기여도 3. 논리체계의 완벽도 4.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. 논문구성 및 표현의 적절성 |
| B | 1. 공학적 기술적 오류는 없었습니까? 2. 용어 및 수식은 검토하였습니까? 3. 논문의 분량은 적당하였습니까? 4.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이 있는가? |
| C | 1. 우수논문 추천 2. 영문 사독 필요 여부 |

5. 판정

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, 수정게재, 재심, 게재불가 등 네 가지로 하며 재심은 2회에 한한다.

- (1) 게재가는 현 상태의 심사용 논문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됨을 의미한다.
- (2) 수정게재는 논문의 오타, 그림의 해상도 등 단순한 내용보완과 편집사항으로 국한한다.
- (3) '게재가' 혹은 '수정게재'라 할지라도 논문의 내용추가 및 변경 등에 대한 심사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에게 메일로 최종 판정을 확인한다.
- (4) 재심은 논문심사본의 내용 추가, 변경 등의 수정사항을 재심사항을 의미한다.
- (5) 게재불가는 논문의 게재를 거부한다.

6. 심사료

논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(20,000원, 급행의 경우 50,000원)를 지불한다.

7. 논문심사진행

- (1) 심사위원은 논문 초심 개시 후 2주 이내(급행은 1주)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(2) 논문 초심 시에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기한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.
- (3) 투고자는 수정통보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 수정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투고자의 합당한 사유(장기 해외 출장, 논문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)가 있을 경우에는 투고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1회(30일)에 한 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(4) 심사위원은 투고자로부터 수정본을 받은 후 1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단,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(5) 심사위원이 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을 기술하여야 한다.
- (6) 심사위원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 논문은 심사의견 검토 후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모든 심사위원에게 공유 여부를 결정 하여 진행하며 심사결과를 공유할 경우 심사위원은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.